◈며느리 권씨 열전 21-2

공인(恭人) 권씨(추밀공파 27세, 권경 權樏의 딸)

전주 이언징(李彦徵, 세종대왕 5子인 광평대군 11世)의 부인

16世 권근 문충공 17世 권제 문경공 등 삼대묘. 조선을 중심으로 한 '천상열차분야지도' 충북 음성 생극면 소재. 삼대묘 앞에 우뚝하다. 사진 네이버

전주 이씨 이언징의 부인 공인 권씨(恭人 정5품급 1704-1733)는 부친 권경(1645년생)과 나이 차이가 많이 난다. 앞으로 모든 족보의 교차 검증이 인공지능으로 가능 할 경우 대단한 반향이 우려(?)된다. 현재 안동권씨대동보 AI 라벨링 작업이 구상되고 있고 성화보도 처음이요. 전자족보도 비록 미흡하나 처음이니 그 기대되는 바가 크다.

그리고 그 남편 이언징은 언급한 대로 과거에 장원하고도 발표전에 49세로 중풍으로 사망하니 전례없는 사실이요. 원통함은 누구나 절감하는 바이다.

그리고 부인 권씨도 아들 이응현(1726-1790)이 어릴 때 사망한다. 그의 문집인 '노곡집'을 보면 그는 비록 초야에 있었지만 그 학문은 경문을 통달한 수준으로 평가된다. 이언징(1708-1756)의 손자 이호중(1747-1821)이 '졸옹집'을 쓰고 그 할아버지에 대해 쓴 글을 보면 잘 알 수가 있다.

"그리고 증조부이신 휘가 천정(天挺)인 이 분은 벼슬이 처음 벼슬은 사용(司勇, 정9품) 겸 통덕랑(通德郎, 정5품)을 지내셨고, 이 분은 저의 돌아가신 증조할아버지이시다. 저희 할아버지의 휘는 언징(彦徵)이며 맑은 덕을 가지신 분이다. 재취하시니 안동권씨(安東權氏)로 휘 경(木+景)의 딸인데 돌아가신 저희 아버지를 낳았습니다. 이것이 저의 조상님들의 내력입니다.

부군(府君, 아버지 이응현李膺顯)은 영종(英宗) 병오(丙午, 1726년) 정월 14일에 태어나셨고 용모는 빼어나게 아름답고(秀雅) 기량은 넓으시고 아주 어린 나이에 재주가 많으셨다. 내가 듣기로는 부군(府君)이 독서할 때 스무 줄의 내용을 한 번을 읽고 바로 외우시고 자신의 생각을 이야기하셨다고 한다.

한 가지 일을 보면 세 가지를 알아내고 본질을 통찰하고 말수가 적고 태도가 신중했으며 만사를 통찰하고 찬찬하게 고찰하였습니다. 해결하지 못한 문제에 끝까지 매달리지 않으며 가볍게 행동(浮躁)하지 않았고 마치 어른처럼 행동하셨습니다.

열 살 나이에 역사에 관한 책을 많이 읽으셨고 시와 글을 쓸 수 있었고 마을 사람들은 모두 크게 되리라 기대가 컸습니다. 동자(童子)가 될 때 공산(公山) 백장(白場, 과거시험장)에 가셨으니 자사(刺史, 태수)가 그의 글을 보고 일등으로 뽑았고 많은 사람들 앞에서 이렇게 칭찬을 했습니다. 이 젊은이는 천재이며 마치 옛날 등왕각(滕王閣)의 왕발(王勃)과 같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집안은 처음부터 가난했으나 부모님을 모시는 데에 나이가 들수록 은근하며 모든 힘을 다해 좋은 것을 구해서 부모님을 모셨습니다. 게다가 아버지의 뜻을 한결같이 이어받았고 공순하지 않은 적이 없었습니다.

여덟 살에 어머니를 잃고 계모(繼母) 황부인(黃夫人)을 모시는 데에 자신의 친어머니 처럼 모셨습니다. 황부인(黃夫人)은 '진실한 효(孝)로서 나를 모시니 자신이 낳은 자식이더라도 이 아이보다 못했을 것이다'라고 칭찬의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어린 나이에 집안의 가장이 되어 계모(繼母)와 두 동생을 데리고 그들을 편안하도록 돌보아 주고 독서를 열심히 하도록 권해줬습니다. 게다가 바쁜 일이 생기면 스스로 힘을 썼습니다. 손님을 대접하고 일을 처리 할 때는 꼭 따뜻하고 밝은 분위기를 유지하고 만약 가난하거나 곤란이 있는 사람을 보면 꼭 온 힘을 다해 도와드렸습니다.

조정에서 해미(鮮靡, 특별세特別稅)를 징수하기로 했는데 남쪽 땅의 사람들이 원망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아버님은 걱정을 했지만 개의하지 않으셨습니다. 다른 선비들에게 하는 말로는 '세금을 징수하는 수(수数, 장부帳簿)가 있는데 무엇을 걱정하느냐?'고 했습니다.

정우(丁憂, 탈상脫喪)할 때 또한 외우(外憂, 상喪)를 만났으나 스스로 정이 깊은 제문을 쓰셨고 상복의 질(絰, 대帶)을 벗지 않고 3년 동안 묘 옆의 오두막집에서 지내셨습니다.

진천 농다리, 김유신의 출생지, 천수백 년의 기록. 생거진천. 권씨부인이 살던 곳은 백곡면이나 당시 문집에 묘사된 것과는 너무 다르다. 일제강점시 백곡저수지 조성 등으로 풍광이 달라졌을 것이다. 사진 진천군

삼환재(三患齋) 봉암(鳳巖) 채선생(蔡先生) 문하에서 공부를 해본 적이 있으며 받은 평가는 아주 높았었습니다. 향년 65세에 당저(當宁, 황제皇帝) 경술(庚戌, 1790) 12월20일에 돌아가셔서 묘지는 진천(鎭川) 엽둔치(葉屯峙, 고개 이름) 신좌(辛坐, 서북향西北向)에 모셨습니다.

이언징 할아버지는 숙종(肅宗) 무자(戊子, 1708) 3월 23일에 태어났고 품성은 순박하고 성실하며 총명하고 지혜로워 집안의 정훈(庭訓. 가정교육家庭教育)을 얻어 어린 나이에 글과 시를 배우고 가난한 생활에 만족하면서 학문적인 진보를 추구하셨습니다. 자식을 가르치는 일에 몰두하고 그 세대 시문(詩文)의 대가(大家)였었습니다.

부모님을 모시는 데에 정성을 다하시고 두 동생과 어울릴 때 아우들의 의지가 되고자 하신 의도로 도와드렸습니다. 종중의 어른들을 대접하면 진실하고 꾸밈없는 마음으로 대하시고 친구와 동료들을 대할 때는 꼭 충신(忠信)을 바탕으로 도와주셨습니다. 게다가 드센 하인을 거느릴 때는 물질을 베풀어 감화시키기보다 처벌을 하지 않아도 스스로 규칙을 지키도록 감화시키셨고 이웃과 마을의 여인과 어린 아이들은 모두 저의 아버지가 착한 분이라고 칭송했습니다.

영종(英宗, 영조) 을해(乙亥, 1755) 가을 과거시험에 최종 시험을 보도록 한양(漢陽)으로 상경했습니다. 그다음 해인 병자(丙子,1756) 4월에 시험을 보니 어렵게 시험장에 입장하였는데 갑자기 중풍(中風)이 발생하셨습니다. 바로 숙소에 돌아가서 치료받았는데 그날은 4월14일이었습니다.

시험의 주관자가 저의 할아버지의 시험지를 장원으로 뽑아서 공시하려고 할 때 우리 할아버지가 벌써 돌아갔다는 소식을 듣고 발표하지 않았습니다.

오호! 통재라! 우리 할아버지는 그 전에 숙부이신 동추공(同樞公)의 적장질(嫡長侄)로서 육품 벼슬의 교첩(教帖)을 받고 정주(旌主, 사령관司令官)에게 보냈었습니다. 어찌 원한이 없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향년 49세로 덕은 있으나 장수하지 않아 하늘의 이치가 어찌 이럴 수가 있습니까?

할아버지는 처음에 인동장씨(仁同張氏) 수(璹)의 딸과 결혼하였는데 부인은 을유(乙酉, 1705)에 태어나셔서 결혼한 지 일 년도 되지 않아 돌아가셨습니다. 또 두 번째 부인 안동권씨(安東權氏)는 아들 응현을 낳고 서른에 돌아가셨습니다.

(다음호에 계속)

글 권오철 기자

우리 인생의 마지막 주관식 시험인 유언장

보청기를 달은 후 유언장을 세 번이나 바꾼 회장님의 이야기

권오형
경영학박사·
공인회계사·세무사

튼튼하고 잘나가는 회사를 운영하시던 어느 회장님의 보청기에 얽힌 이야기를 하려고 한다.

그 회장님이 어느 날 갑자기 귀가 안 들리기 시작하여 거래처와는 물론 자녀들과도 대화가 잘 안 되어 이비인후과의사를 찾아갔다. 이비인후과 의사는 검사 후에 보청기를 달 것을 권유하였고, 회장님은 의사의 말을 따랐다. 의사는 보청기를 달았으니 잘 들릴 것이지만, 한 달 후에 다시 오셔서 점검을 받아야 한다고 조언하였다.

한 달이 지난 후 검진을 받으러 온 회장님에게 의사는 보청기의 상태 등에 대한 검진을 한 후에 이상이 없음을 말하였다. 그리고 자녀들과의 대화가 순조로웠는지를 물었다. 회장님은 아주 편하고 좋았다고 하면서, 우리 자식들은 내가 보청기를 달은 것을 모르고 있다고 대답하였다. 의사는 이상해서 왜 보청기를 달은 것을 말씀하지 않았는지를 물었다. 그러자 회장님은 보청기를 달은 "지난 한 달 동안 나는 자식들에 대한 재산상속에 관한 유언장을 세 번이나 바꾸었네"라고 말씀하시더라고 하셨다.

이런 이야기를 라디오를 통해 들었기 때문에 금번에는 상속에 관련된 유언과 유언장의 작성요령에 대하여 설명하려고 한다.

재산을 소유한 회장님(피상속인)이 자기 재산을 적극적으로 자식들(상속인들)에게 나누어주는 유일한 방법은 유언장을 통하는 방법이다. 그런데 회장님의 자식들은 아버지가 보청기를 달았기 때문에, 아버지가 잘 듣는다는 사실을 모르고 시간과 장소를 가리지 않고 아버지에 대한 불평, 불만을 터뜨림으로써 배신감을 느낀 회장님이 유언장을 변경하여, 자식들이 받아야 할 재산의 내용을 고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므로 우리 속담의 "낮말은 새가 듣고, 밤말은 쥐가 듣는다" 말이 생각나며, 항상 말조심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자식 등에게 재산을 물려주는 유언은 우리 인생의 마지막 주관식 시험문제라고 볼 수 있다.

유언은 상대방이 없는 단독의 의사표시로서 사망에 의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며, 생전뿐만 아니라 유언에 의하여 사후의 법률관계의 지배도 인정된다. 다만 그 내용은 유증, 상속분의 지정, 유산분할방법의 지정, 상속인의 폐지·인지 등 법률로서 정한 일정한 것에 한한다.

유언의 방식은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 비밀증서에 의한 유언,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 녹음에 의한 유언, 구수증서에 의한 유언 등이 있는데, 다음 요령으로 자필로 작성하여야만 한다.

본인(피상속인)의 뜻이 잘 반영될 수 있게, 세금이 가장 적게 나오게(절세대책), 재산이 손자에게까지 갈 수 있게, 배우자의 노후가 보장되게, 자녀 간 갈등이 없도록 작성하는 것이 요령이다.

자필증서 유언장은 반드시 자필로 전문을 작성해야 하며, 작성연월일(○○○○년 ○월 ○일로 해야 하며, 회갑일, 결혼기념일 등으로 하면 무효가 된다), 주소, 유언자가 직접 쓴 성명, 날인(지장도 유효)의 5가지 요건이 구비돼야 한다.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장은 증인이 필요 없고, 비밀유지가 가능하지만, 위조 또는 변조의 약점이 있다. 녹음에 의한 유언은 유언내용을 녹음기에 녹음하는 방법으로 증인이 한 명 이상 필요하며, 변조의 가능성이 있다.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장은 공증인이 유언자 대신 유언장을 작성하는 가장 확실하고 안전한 유언방식으로서 증인이 2명 이상 있어야 하며, 공증 관련 비용이 든다.

유언자가 공증인 앞에서 유언의 취지를 얘기하고, 공증인이 그 내용을 유언장으로 만든 후, 공증인은 유언자와 증인에게 내용이 정확한지를 확인한 뒤 유언자에게 서명, 날인을 받음으로써 유언장이 완료된다.

비밀증서에 의한 유언장은 유언내용은 비밀로 하되. 유언의 존재는 명확하게 하는 방법으로서 확정일자를 받아야 한다.

구수증서(證書口受)에 의한 유언은 유언자가 질병 등 기타 급박한 경우에만 작성하는 것으로서 2명 이상의 증인이 필요하며, 유언자의 말을 기록하는 방법이다. 말로 유언을 남길 수 있으므로 편리한 방법이다.

유언내용의 불공평을 조정하는 유류분 청구제도

유언에 의하여 재산을 상속하는 경우 피상속인(유언자)의 의사가 지나치게 감정에 치우치게 되면 여러 사람의 상속인 중 한 사람에게만 재산을 상속하거나 타인에게 전 재산을 유증(유언에 의한 재산 증여) 함으로써 유가족들의 생활의 안정을 해치고 사회적으로 바람직하지 못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그래서 민법에서는 유가족들의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각 상속인이 최소한도로 받을 수 있는 상속분을 법으로 정하고 있는데 이를 '유류분' 이라고 한다.

상속권 있는 상속인의 유류분은 다음과 같다.

유류분의 한도는 배우자와 직계비속은 법정상속지분의 1/2이고, 직계존속과 형제자매는 법정상속지분의 1/3이다. 유류분의 청구기한은 1년이며, 반환청구소송 기한은 15년이다. 민법상 유류분 계산은 피상속인의 상속개시 때의 재산에 상속개시 이전 1년간 행한 증여재산을 합한 금액에서 채무를 공제하여 계산한다.

유언이 없는 경우에는 협의상속과 법정상속에 의하여 상속재산을 나누게 된다.

협의상속은 공동상속인 전원이 참여하고 동의하여 결정하는 방식이다. 겉으로는 가장 이상적인 방법이지만 형제자매들 간의 상속재산 분할협의는 합의되기가 아주 어려우며, 특히 협의시에 피가 다른 며느리와 사위가 끼게 되면 다툼까지 일어나게 된다.

법정상속은 민법에서 정한 법정 순위대로 상속을 받는 방식이다.

법정상속은 같은 순위의 상속인이 여러 명인 때에는 상속분이 동일한 것으로 하며, 배우자의 상속분은 직계비속과 공동으로 상속하는 때에도, 직계존속과 공동으로 상속하는 때에도 50%를 가산한다.

우리나라의 법정상속비율은 60년 1월 1일 이전에는 장남에게 100% 상속토록 법제화되어 있었지만, 그 뒤 개정을 통하여 배우자와 장남은 1.5를, 차남과 미혼인 딸은 1을, 출가한 딸은 0.25를 받도록 변경되었었다.

그 뒤 조정을 거쳐 91년 1월 1일 이후에는 배우자에게만 50% 할증되고, 장남·차남·장녀·차녀 의 상속비율이 모두 동일하게 조정되었는데, 그 결과 장남(큰며느리)의 지분이 축소되고 시집간 딸들의 비율이 높아진 결과로 조정되었다. 즉 장남(큰며느리)은 1.5→1.0으로 감소되어 50%가 줄고, 결혼한 딸은 0.25→1.0으로 조정됨으로써 4배가 늘어나게 됨으로써 모든 장남과 큰며느리들은 상속비율이 개정된 91년 1월 1일 이후에는 부모님들에 대한 부양의무에서 해방되었다고 말하고들 있다.

상속이 개시되면 피상속인의 재산상의 모든 권리와 의무는 상속인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법률상 모두 상속인이 물려받게 된다.

상속재산이 부채보다 많다면 별 문제가 없으나, 부채가 상속재산보다 많은 경우에도 상속인의 의사를 무시하고 자산과 부채를 모두 상속인에게 승계시킨다면 이는 매우 가혹한 일이다.

왜냐하면 상속재산으로 피상속인의 채무를 전부 갚지 못하므로 상속인 자기의 고유재산으로 갚아야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민법에는 이런 경우에 상속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상속포기 제도를 규정하고 있다.

상속을 포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내에 가정법원에 상속포기 신고를 해야 한다. 그러나 이 기간은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가정법원이 연장할 수도 있다.

공동상속의 경우에도 각 상속인은 단독으로 상속을 포기할 수 있으며, 상속을 포기하면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것으로 된다.

피상속인의 재산상의 모든 권리와 의무는 상속을 포기한 자에게는 승계되지 아니한다.

상속재산으로 재산이 많은지 부채가 많은지 불분명한 때에는 상속으로 인하여 취득할 재산의 한도 내에서 피상속인의 채무를 변제할 것을 조건으로 상속을 승인할 수 있는데 이를 한정승인이라고 한다.

상속인이 한정승인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상속재산의 목록을 첨부하여 상속개시지의 가정법원에 한정승인 신고를 해야 한다.

다만, 상속인에게 중대한 과실이 없이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상속 개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알지 못한 경우에도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다.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은 직접적으로 상속세를 절세하는 방법은 아니지만 상속재산보다 부채가 많은 경우에는 상속포기나 한정승인 제도를 이용하면 상속인의 재산을 보호할 수 있다.

깨어나자! ①

권용만 교수

권용만 교수의 '깨어나자' 칼럼을 7월호부터 연재한다. 권용만 교수는 알에서 깨어나 병아리가 되듯이 우리 모두 '깨어나야' 한다고 말한다. 그는 인간의 몸은 소우주(小宇宙)다, 늘 보고 만질 수 있는 내 몸에서부터 상식의 틀을 벗어나 깨달음의 행보를 시작해 보자고 말한다. 〈편집자주〉

의학

의학이나 의사라고 할 때 '의'는 고칠 의(醫)자를 쓴다. 그러나 수많은 병원과 의사들이 있지만 병든 환자를 고치지 못하고 있다. 어쩌다 소 뒷걸음에 쥐 잡듯이 고친 경우가 있는지는 몰라도 필자가 알기에는 없다.

필자의 경우, '의'란 자르고 꿰매고 무슨 제(濟)를 투여해 유지하는 게 아니라 환자를 병들기 이전의 상태로 되돌려 놓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일반인들은 잘 몰라서 그렇지 이미 오래 전에 모 유명 기관에서 의학이 환자를 고치는 비율이 2% 정도라고 밝혔다. 미국은 세계에서 가장 잘 먹고 잘 사는 나라인데 환자는 왜 더 많은지 의료진을 파송하여 연구 조사하였다.

대체의학이란 용어의 발생이나 채식의 선호들이 그 결과물이다.

기존의 의학으로는 병을 고칠 수 없다는 선언을 하였다. 기존 의료계가 병을 고치지 못하는 것은 당연하다. 그 원인은 생명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생명이 무엇인지 모르는데 생명체인 환자를 어찌 고치겠는가?

생명이란 단어를 사전에서 찾아보니 '목숨'이라고 하였다. '목숨'을 찾아 보았더니 '생명'이라 적혀 있다. 코미디도 이런 코미디가 없다. 첨단 과학이 어쩌고 떠들지만, 인류는 생명에 관한 한 아는 게 아무것도 없다. 지구가 네모이고 태양이 지구를 돈다고 하면서, 지구가 돈다고 주장하는 갈릴레이 갈릴레오를 종교재판(1616)에 회부하여 죽이려 했던 것이 지난 날의 역사였다. 그처럼 알지 못하면 자기가 아는 만큼의 무지함 속에 살고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생명'이란 도대체 무엇일까?'

우주 전체가 살아 있는 하나의 '생명'이다. 우주란 시공(時空)이고, 글자 우주(宇宙)는 말 그대로 '집'이다. 초가집, 새 집, 벌집, 헌 집, 개미집, 좋은 집, 추한 집으로 어떤 형태로든지 '집'이란 곳에는 반드시 생명이 살고 있듯이 '우주'라는 시공의 집은 생명으로 가득하다. 이 생명이란 정(靜)과 동(動)의 원동력으로 볼 수 없으며 그것이 드러남이 자연이다. 자연은 스스로 활동한다. 자연은 무한하고 생명은 영원하다. 그것은 마치 파도는 순간이고 바다는 영원한 것과 같이, 생명은 자존자율(自存自律)이요, 무위이화(無爲而化)이다. 인위는 생명활동의 방해요 장애물이다.

의학은 생명을 물질로 알고 분석하는 인위적인 방법이라 치료가 불가능하다. 의학의 의미를 지니고 제구실을 하고 싶으면 먼저 생명을 이해하고 생명의 자율성의 장애를 제거할 줄 알아야 한다. 동서의학 중, 서양의학은 플러스 요법으로 인위 물을 가하는 것이고, 동양의학은 마이너스 요법으로 그 출발은 생명자율성의 장애를 제거하는 방법이었으나, 지금은 사고나 방법이 서양의학과 거의 같아져 버렸다. 심히 개탄스러운 일이다.

사람의 몸은 몸의 각 부분, 심지어 세균에 이르기까지 하나로 연결된 유기적 생명체로 스스로 영위 유지되고 있다. 의학은 과학이라는 미명 아래 생명체인 인체를 산산조각 내어 물질로 다루면서 분석하고 있다. 물론 눈으로 봐야 알겠다는 뜻이겠지만 생명과 영위는 보이지 않는 것이다. 의료계는 의학의 발달을 자화자찬하고 있지만, 검사술만 발달했지 치료술은 항상 제자리 걸음이다. 환자가 입원하면 몇 년 동안 하는 일이 검사이다. 소변검사, 피검사, 담 검사, X-ray 검사, CT. MRI, PET, MRI, 심전도 등.

병원이 하는 일의 90% 이상이 온갖 검사이다. 치료는 수술 아니면 투약인데 환자를 병들기 전 상태로 돌려놓는 고친다는 의미의 '의(醫)의 개념과는 거리가 멀다. 의학의 무지함을 다 열거하려면 책이 10권이라도 모자랄 것이다. 긴 이야기는 다음으로 미루고 중요한 것 한 두 가지만 지적해 보자.

우선 의학은 병이 무엇인지를 모른다. 의학사전에는 수 만 가지의 병명이 등장하는데 병은 하나뿐이요, 약도 하나뿐이다. 병이 무엇인지는 다음 장에서 언급할 것이다.

의학은 또한 병을 밝히고 다루는 게 아니라 병의 결과를 붙들고 거기에만 매달려있다. 수 만 가지의 병명은 병의 결과이지 병이 아니다. 그 예로 구체적인 예 하나를 들어 보자. 소변에서 당이 나오고 췌장에서 인슐린을 분해하지 못하는 것을 당뇨병이라 한다. 이를 치료한다고 설탕을 적게 먹는 등 음식을 주의케 하고, 심하면 인슐린을 인위적으로 투여하는데, 이는 장기의 기능을 퇴화시키는 간접적인 살인행위이다. 왜, 당이 나오고 인슐린 분비가 안 되는지를 알아서 되돌려 놓아야지, 병의 결과적 현상을 놓고 인슐린을 주입한다는 것은 참으로 한심한 일이다.

알러지를 치료한다고 꽃가루, 먼지, 고양이 털, 이상체질 등, 어쩌고 저쩌고 하는데 다 부질없는 일이다. 꽃가루나 먼지 없는 세상이 어디 있겠는가? 왜, 그런 것들이 몸에 이상 반응을 보이는지 원인을 알고 몸을 되돌려 놓아야지, 꽃가루나 먼지나 고양이를 무슨 수로 피할 수가 있는가?

의학의 가장 큰 업적은 세균의 발견이다. 감염되지 않도록 손을 깨끗이 씻고 양치질을 하고, 등등. 이 또한 코미디이다. 의학이 발견한 세균이 몇 가지나 된다고, 공기 중에는 무한대의 균이 있다. 이미 몸에 이상이 생겨서 균이 기생하는 것이지, 균이 병의 원인이 아니다.

간단히 병의 원인과 결과에 대한 예를 들어보았지만 이에는 의학이 제시하는 수 만 가지의 병명이 모두 해당된다. 병명은 병의 결과이지 원인은 아니다. 원인을 치료해야지 결과를 치료하는 것은 말이 되지를 않는다.

이것이 오늘날 의학의 수준이다.